

Ⅱ. 퇴직금 중간정산 실태 및 제반문제

1. 중간정산 현황

- 노동부의 조사결과 등1)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급여의 소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2008년 실태조사 결과, 법정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70.8%가 중간정산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어 2006년의 68.3%에 비해 2.5%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중간정산을 실시한 기업 비율

(단위: %)

연 도	2006년(N=360)	2008년(N=500)
응답률	68.3%	70.8%

자료 : 노동부(2006) 및 노동부(2008)

- 업종별 중간정산 실시 기업체수를 보면, 제조업의 77.4%가 중간정산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건설업(66.1%), 서비스업(65.0%) 순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제조업이 건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기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간정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 중간정산의 현황과 원인에 대해서는 노동부,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실태 조사보고서, 2006.12 및 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도입·운영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2008.12, 보험연구원, '퇴직보험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2009.10 등에 의거 작성

<표 2> 업종별 중간정산 실시 기업 비율

(N=500)

업종	실시	미실시
제조업	77.4%	22.6%
서비스업	65.0%	35.0%
도소매업	61.5%	38.5%
건설업	66.1%	33.9%
기타	75.0%	25.0%

자료: 노동부(2008)

□ 또한 근로자 수가 많고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일수록 중간정산을 보다 많이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50.6%의 기업이 중간정산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수 100인이상 기업의 80%이상이,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84%이상이 중간정산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됨.

<표 3> 중간정산 실시 기업의 속성별 비교

속성별	기업 규모	실시 기업 비율	미실시 기업 비율
전체	(N=500)	70.8%	29.2%
근로자수	9명 이하	48.4%	51.6%
	10-49명 이하	69.6%	30.4%
	50-99명 이하	79.2%	20.8%
	100-299명 이하	80.2%	19.8%
	300명 이상	81.8%	18.2%
노동조합 유무	있음	84.4%	15.6%

자료 : 노동부(2008)

□ 특히 상당수 기업이 근로자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기적인 중간정산 실시가 퇴직연금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4> 중간정산 실시 형태

(N=354)

속성별	정기적으로 실시	근로자 요구	사규 요건 충족시	기타
응답률	36.4%	50.6%	6.5%	6.5%

자료: 노동부(2008)

2. 중간정산 원인

- 중간정산이 일반화된 근본적인 이유는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메리트를 강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목돈 및 기업의 자금부담 해소 니즈가 증대하였기 때문임.
-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해서(54.8%), 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서(21.5%),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정리 차원에서(16.7%)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중간정산 실시 원인

(N=354)

이유	근로자의 목돈 필요	기업의 경영개선 차원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정리 차원에서	기타
비율 (응답율)	54.8%	21.5%	16.7%	23.5%

자료 : 노동부(2008)

- 특히 영세기업(9인 이하 근로자)의 경우 누적되는 '퇴직부채 해

소 등 경영개선 차원에서 실시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6> 기업 경영개선을 위해 중간정산 실시 기업 규모별 비율
(N=354)

	9명 이하	10~49명 이하	50~99명 이하	100~299명 이하	300명 이상
사례수(N)	31	174	57	65	27
응답률	38.7%	23.6%	19.3%	10.8%	18.5%

자료 : 노동부(2008)

근로자의 목돈 필요로 중간정산을 실시한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남.

<표 7> 목돈 필요로 중간정산 실시한 기업 비율
(N=354)

업 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응답률	68.8%	56.8%	41.7%	38.8%	43.8%

자료 : 노동부(2008)

이러한 중간정산 자금을 퇴직연금제도로 흡수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2009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²⁾, 기업들은 대체로 퇴

2) 퇴직보험을 해지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1,679개 기업 중 3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직연금세제의 확대와 더불어 중도인출 조건의 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표 8> 퇴직연금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N=314, 1,2,3순위 복수응답)

제도 개선 사항	기업 및 근로자 세제지원 확대	중도인출 조건완화 및 중간정산제도 폐지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강화	노후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제도 형태 및 운영 구조의 다양성
비율	108.0%	52.4%	39.2%	30.3%	28.3%

자료 : 보험연구원(2009)

또한 많은 기업들은 중간정산제도 폐지 및 중도인출 조건완화 등이 퇴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고 있음.

○ 퇴직연금 미가입기업의 경우도 중간정산제도의 실시가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³⁾

3. 중간정산의 제반문제

가. 개인의 노후생활 리스크 증대

자금의 사전확보, 일시적인 단기자금 필요 등으로 인해 중간정산이 이루어져 연금재원이 소진되는 경우, 개인의 노후생활(생존리스크) 대비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음.

3) 중간정산제도의 실시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 34.8%, '그렇지 않다' 23.6%, '보통이다' 41.6%로 응답함[노동부(2008), N=250].

○ 재직 중인 근로자의 대다수가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통해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Option)이며 혜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

□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연구원이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 및 투자보다 생활비, 부채해결 등과 같은 단기성 지출에 중간정산 자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중간 정산한 자금이 생활비 등과 같이 근로자의 은퇴후 소득보장과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부분이 지출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제도의 역할이 중요시됨.4)

<표 9> 중간정산 퇴직금 사용처

(N=55, 복수응답 포함)

사용처	노후자금으로 저축 또는 투자	생활비, 내구재 구입 등의 지출	자녀 교육비로 지출	자녀의 결혼자금 및 주택자금	부채 해결	장기 부동산 및 주식 투자	단기적인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	기타
비율	6.7%	60.0%	26.7%	10.0%	56.7%	23.3%	3.3%	6.7%

자료: 보험연구원(2009)

□ 또한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경우, 자금 수요 니즈가 전혀 없는 근로자까지 중간정산 하는 결과를 초

4) 근로자들이 노후생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보거나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노후대비를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둘 경우 노후에 빈곤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의 책임 하에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퇴직연금을 강제화하여 공적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김성숙의 6인 '공적연금의 이해', 국민연금연구원, 2008.12, pp. 11~12 참조).

래해 자칫 자산관리나 투자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5)

- 이 경우 중간정산에 따른 근로자들의 노후 불안과 근로의욕 저하로 기업의 근무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의 기능 와해

□ 퇴직금제도는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World Bank 등 국제기구가 근로자의 적정소득대체율로 국민연금 30~40%, 퇴직연금 30%수준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과 역할은 중요시됨.

<표 10> 국·내외 노후소득보장수준 비교

(단위: %)

보장구분		WB 권고수준	미국	영국	일본	한국
1층	국민연금(a)	30 ~ 35	41	31	34	25
2층	퇴직연금(b)	30 ~ 35	38	39	26	12
3층	개인연금(c)	10 이상	10(가정**)			8
합계(a+b+c)		70~80	89	80	70	45

주 : 해외의 경우 개인연금에 대한 관련자료가 없어 권고수준인 10% 가정
 자료 : OECD, KDI, 보험연구원

□ 그럼에도 중간정산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대체기능이 상실될 경우, 3

5) 이러한 현상은 국민은행의 전체직원 1만 8,000명 가운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가 8,500명에 이르는 등 중간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음.

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자체가 와해될 우려가 있음.

○ 2007년 기준으로 GDP 대비 퇴직연금 적립자산비율은 미국 76.7%, 일본 20.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1%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⁶⁾

□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정산으로 인한 연금재원 사전유출은 사적연금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다. 법 논리 적용상의 문제 대두

□ 퇴직금에 대한 법적 논리는 공로보상설, 생활보장설, 임금후불설 중에서 대체로 임금후불설에 근거하고 있으며 임금후불설이 정설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임.

○ 공로보상설은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 생활보장설은 생활안정지원, 임금후불설은 재직중 임금에 대한 후불적 개념 등에 기초하고 있음.

□ 그럼에도 퇴직금은 장래 도래시기가 불확실한 퇴직시점에 지급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임금과 구분되어질 필요성이 있음.

○ 퇴직금은 노후생활 자금확보를 위한 사회보장수단의 하나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수급권에 대해 불가침적 귀속권한을 부여한 것임.

□ 이러한 점에서 퇴직금의 임금후불설적 논리가 중간정산제도라

6)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9

는 임시적인 제도에 의해 훼손되는 것은 엄격한 법 논리의 적용상 문제가 존재함.

- 특히 중간정산시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여 과도한 세제혜택까지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화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